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28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0일

발 의 자: 남궁역 의원(1명)

찬 성 자: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동욱,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창진, 민병주, 박춘선,
박환희,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이병운, 이봉준,
이영실,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원을 비롯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 대해서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게 하여 서울시 수돗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 대해서도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종전의 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
육법」 제31조제2항”을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9조제3항 중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을 “학교, 「고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p> <p>2. ~ 5. (생략)</p> <p>② (생략)</p> <p>제9조(관리)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6조(설치) ① ----- ----- -----.</p> <p>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p> <p>4. ~ 7.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 ----- ----- -----.</p> <p>④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3100600000004

미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남궁역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3.10.06.

회신일 : 2023.10.11.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침부 근거 규정
3. 미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 대해서도 음수 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627,000천원(연평균 125,4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25,4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4~2028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2022년 서울시 대학교 통계의 38개 대학에 5년에 걸쳐 설치하는 것으로 전제
- 2023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아리수 음수대 구매 비용 준용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627,000천원(연평균 125,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음수대 설치 (안 제6조)	125,400	125,400	125,400	125,400	125,400	627,000
	소계(b)	125,400	125,400	125,400	125,400	125,400	627,000
□ 총 비용(b-a)		125,400	125,400	125,400	125,400	125,400	627,000

- 음수대 설치 = 627,000천원
 - = 음수대 1개 설치비 * 38개 대학
 - = 16,500천원 * 38개

※ 2023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음수대 구매 비용 준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붙임1] 서울시 대학 현황

대학교

- 자료갱신일 : 2023-03-03 / 수록기간 : 년 1996 ~ 2022 / 자료문의처 : 02-2133-4361
-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기본통계

일괄설정

통계표조회

항목[1/1]
대학교 구성 및 인원현황별[20/20]
대학교별[43/43]
시점[10/27]

새창보기
주석보기
주소보기
행렬전환
부가기능설정
분석
차트
다운로드
인쇄
도움말

대학교별(1)	대학교별(2)	대학교 구성 및 인원현황별(1)	대학교 구성 및 인원현황별(2)	2022	2021
3) 합계	소계	대학교수 (개)	소계	38	38
		학과(학부)수 (개)	소계	2,347	2,359
		학생수 (명)	소계	496,926	504,661
			남자	244,106	248,122
			여자	252,820	256,539
		1) 교원수 (명)	소계	18,967	18,813
			여자	4,997	4,837
		사무직원수 (명)	소계	16,441	15,005
			여자	9,249	8,224
		2) 졸업자현황 (명)	졸업자수	90,312	85,641
			진학자수	...	9,099
			취업자수	...	47,791
			입대자수	...	552
		입학자현황 (명)	입학지원자수	1,066,547	982,740
입학자수	84,982		84,771		